

# 프랑스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의 현황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 ■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개정된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근무시간면제를 부여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처음 시행되는 것만큼 근무시간면제의 한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배분 및 적용, 관련 복무규정 등 근무시간면제제도와 연관된 다양한 요인에 대한 파악 또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프랑스 공무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와 그와 연관된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근무시간면제 한도, 배분, 적용, 그리고 노조활동 관련 부재승인 규정 등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 공무원은 2021년 기준 567만 명으로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전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252만 명, 44.4%), 지방공무원(194만 명, 34.2%), 의료공무원(121만 명, 21.3%)의 세 범주로 구성된다.<sup>1)</sup> 우선 국가공무원은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차원의 국가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정부 공무원에는 중앙부처, 부처산하 공공행정기관(EPA) 및 독

1) DGAFP(2023), "Fonction publique: Chiffres clés 2023, Ministère de la transform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https://www.fonction-publique.gouv.fr/> (2024.2.23). 법관과 군인은 별도 지위를 구성한다.

립행정기관(AAI)<sup>2)</sup> 소속 공무원이 있다. 지방차원의 국가사무담당 공무원은 중앙정부 지휘하에 지방행정과 교육을 담당하는 도청 및 교육청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부분의 유·초·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교원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로 지방공무원은 코뮌(기초)-데파르트망(중광역)-레지옹(광역) 3차원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다. 마지막 의료공무원은 공공병원시설, 공공요양원, 아동 복지부 산하 공공시설, 장애인 시설, 사회재활센터 등에서 근무한다.

특히 프랑스에서 대부분의 교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며, 국가공무원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를 관리한다. 2023년 기준 총 120만 명의 국가교육 담당자는 86만 명의 교원과 34만 명의 비교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원 중 72만 명이 국립(83.7%)에, 14만 명이 사립(16.3%)에 있다.<sup>3)</sup>

프랑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의료공무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해오면서 규모나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공무원 사례를 중심으로 개괄하며, 지방공무원과 의료공무원 사례에서 차이점을 보충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다.

## ■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 내용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노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공무수행을 면제받는 공무원은 공무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sup>4)</sup> 이러한 규정은 향후 노조 업무 종사자에 대한 신분 규정에도 영향을 미친다.<sup>5)</sup> 프랑스 공무원의 노조활동관련 근무시간면제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이

2) 독립행정기관(AAI)은 “국가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나 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으로 시민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 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등이 이에 속한다.

3) DEPP(2023), “L'Education nationale en chiffres 2023”, <https://www.education.gouv.fr/> (2024.3.15).

4) 이는 국가(「법률A」 제33조), 지방(「법률B」 제56조), 의료(「법률C」 제97조) 공무원 모두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법률C」의 정식 명칭은 「의료공무원 신분에 관한 법률」로 전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512459> 그외 법률A, B, 명령A, B, C, 회령A의 정식명칭은 글 이하에서 각각 각주로 표시)

5) 이는 소위 “무급전임자”를 도입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글에서 서술하는 전임자 외에 노조활동을 위해 노조가 임금을 지급하는 전임자를 둘 경우 “휴직”으로 신분을 규정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에는 본인 요청에 따른 “전출(détachement)”로 규정하여 경력을 유지한다(1986년 1월 13

구분된다.

- ① 전임자(agent mis à disposition): 전국단위 노조부여
- ② 근무시간면제(DAS): 기관단위 노조부여
- ③ 특별부재승인(ASA): 노조대표 개인부여
- ④ 노조설명회 개최 및 참여: 대표노조, 비조합원 포함
- ⑤ 노조교육: 개인부여, 비조합원 포함

이에 대해 국가, 지방, 의료 공무원은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전임자와 근무시간면제는 세 범주의 공무원 제도에서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고, 특별부재승인 및 그 외 제도는 유사하다.

<표 1> 프랑스 공무원의 노조활동시간

구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의료공무원
규모		252만 명(44.4%)	194만 명(34.2%)	121만 명(21.3%)
노조 활동 시간	전임자 (전국단위, 노조부여)	•부처 혹은 기관별 공무원 수(선거 인명부등록 유권자) 기준으로 풀 타임 전임 시간 부여	115.5명(103명+12.5명)	90.5명(84명+6.5명)
	근무시간면제 (기관단위, 노조부여)	•통합공무원위원회(CCFP) 전임 자 23명	지자체별 공무원 수 기준으로 면제시간부여(연, 월)	기관별 공무원 수 기준으로 면제시간부여(연, 월)
	특별부재승인 (개인부여)	•노조 대표: 노조총회 및 운영기구 회의를 위한 10~20일 •노사동수기구 위원의 회의참여(회의 예상시간, 이동시간, 회의 준비시간)		
노조 관련 시간	노조 설명회 개최 및 참여 (대표노조, 개인)	•대표노조: 월례설명회를 한 달에 1시간(분기당 3시간 전환 가능) 개최 가능 •모든 공무원: 최대 연 12시간 내 특별부재승인을 통해 참여 가능		
	노조 교육 (개인부여)	모든 공무원 연간 최대 12일 유급휴가로 참여 가능		

자료 : 본문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일 제86-68호 명령 제2조 13항).

## 전임자와 근무시간면제

### 국가공무원 : 전임자와 근무시간면제의 통합 운영

국가공무원의 노조활동시간에 대해서는 「명령A」<sup>6)</sup> 제16조와 「회람A」<sup>7)</sup> 3.3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임자와 근무시간면제를 구분하여 부여하는 지방공무원이나 의료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은 전임자와 근무시간면제를 통합하여 노사활동시간을 풀타임 전임시간(ETP) 단위로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구분하여 관리하던 방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것인데, 이를 통해 노조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회람A」 3.3). 노조활동시간 계산 및 분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첫째 단계 : 부처 혹은 기관의 총할당량 결정

「명령A」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노조활동시간은 4년마다 부처 혹은 기관의 사회행정협의회(CSAM 또는 CSAE)<sup>8)</sup>를 갱신할 때 각 부처 혹은 기관 단위로 결정한다. 인력의 20% 이상이 변동하는 부처 범위 변경이 없는 한, 재계산할 필요 없이 매년 갱신된다.

부처의 경우 CSAM 갱신을 위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공무원 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CSAM으로 대표되지 않는 공공행정기관(EPA) 및 독립행정기관(AAI)은 별도로 기관사회협의회를 두고 공무원 유권자 수로부터 할당량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다(「회람A」 3.3). 노사활동시간 측정 단위는 풀타임 전임자(ETP)이다. 1 ETP는 풀타임으로 고용된 공무원 한 사람의 근무시간에 해당한다.<sup>9)</sup>

6) 정식 명칭은 「공무원 단결권 행사에 관한 명령」으로, 명령 전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880484>

7) 정식 명칭은 「국가공무원 단결권 행사에 관한 2014년 7월 3일 회람」으로, 회람 전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circulaire/id/38489>

8) 사회협의회(comité social)는 부처나 기관 단위 공무원 대표기구이자 임용권자와의 협의기구로, 부처, 공공기관, 독립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한다. 협의회는 임용권자 대표(장관·기관장, 인사국장)와 공무원 대표로 구성하고, 공무원 대표는 4년마다 공무원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권자 대표는 기초단위에서는 시장이며 시·도(département)와 광역시·도(région) 단위에서는 의회 의장이다. 2019년부터 공무원 보건·안전·근로조건위원회(CHSCT)와 기술위원회(CT)가 통합하여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2019년 8월 6일 법률 2019-828호). 명칭은 공무원 분야별로 부처행정사회협의회(CSAM), 지방사회협의회(CST), 기관사회협의회(CSE)로 상이하다.

9) 일반적으로 1 ETP는 연 1,820시간(주 35시간x52주)이지만, 법정 35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

- 규모 14만 명 이하인 기관에서는 230명마다 한 명의 완전전임 시간(1 ETP)
- 14만 명 초과인 경우 14만 명 초과 인원에 대해서 650명마다 한 명의 완전전임 시간(1 ETP)<sup>10)</sup>

• 둘째 단계 : 총할당량의 배분

배정된 노조활동시간의 총할당량은 부처 내 노조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노조 간 분배한다.

- 절반은 부처 혹은 기관사회행정협의회에 대표 노조의 보유 의석수에 비례 분배
- 나머지 절반은 부처 혹은 기관사회행정협의회 선거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득표수에 비례 분배<sup>11)</sup>

이와 같은 분배 방식은 지방·의료 공무원의 근로시간면제 할당량 분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명령B」<sup>12)</sup> 제13조, 「명령C」<sup>13)</sup> 제16조 제3항.

• 셋째 단계 : 근무시간면제 대상자 지정

근무면제시간 할당량을 배정받은 노조는 자신의 ETP 한도 내에서 이를 부여할 공무원을 선임한다(「명령A」 제16조 제6항). 각 노조는 해당 장관 또는 기관장에게 다음 사항을 전달한다.

- 전임자 명단(성, 이름, 직책, 근무면제시간)
- 시간형태로 사용할 ETP 수(노조 필요에 따라 대상 지정, 일/반일 단위로 표시하여 요청)

면제자 임명이 행정부의 원활한 기능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장관 또는 기관장은 거부 사유와 함께 노조에 다른 면제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동수행정위원회(commission administrative paritaire)에 이 결정을 통보한다.

같이 예외도 존재한다.

- 10) 가령 8천 명의 직원이 있는 부처는 34.80 ETP(8,000/230)를 노조 간에 배분하고, 95만 명의 직원이 있는 부처는 1,855 ETP(140,000/230+810,000/650)를 부처 내 노조 간에 배정한다.
- 11) 이는 선거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면제시간을 부여하면서도, 협의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지닌 노조에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12) 정식 명칭은 「지방공무원 단결권 행사에 관한 명령」으로, 명령 전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TEXT000006064981/>
- 13) 정식 명칭은 「의료공무원 단결권 행사에 관한 명령」으로, 명령 전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TEXT000006065634/>

이와 별도로 2012년 1월 30일 2012-148호 명령 제23-1조에 따라, 통합공무원위원회(CCFP)<sup>14)</sup> 참여 노조에 총 42명의 전임시간(국가공무원에 23명, 지방공무원에 12.5명, 의료공무원에 6.5명)을 부여하고, 이를 최근 사회협의회 선거의 전국 차원 득표율 집계에 따라 전국 노조에 배분한다.<sup>15)</sup>

## 지방공무원 : 전임자와 근무시간면제

### • 전임자

「법률B」<sup>16)</sup> 제100조에 따라 원활한 노조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지방공무원의 전임자는 총 103명이다. 급여비용은 전체 운영 예산에서 가져온 특별 예산에서 지급된다. 여기에 CCFP에 참여하는 지방공무원 노조에 제공되는 전임자 수 12.5명이 추가된다(지방자치단체법 시행령 R.1613-2조).

지방자치단체법 시행령 R.1613-2조에 따라 부여된 103명의 풀타임 유급전임자(CCFP에 따라 제공되는 전임자 제외)는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명령B」 제27조).

- 지방공무원최고위원회(CSFPT) 대표 노조에 각 4명의 전임자 배분
- 남은 인원은 CSFPT 의석 배분을 위해 고려된 선거 득표율에 비례하여 노조에 배분

### • 근무시간면제

「명령B」 제19조는 지자체나 기관의 소속 공무원 수에 따라 근무면제시간을 규정한다. 이에 추가로, 해당기관의 지자체사회협의회 유권자가 수행한 작업 1천 시간당 1시간 비율로 제공한다(「명령

14) 통합공무원위원회(CCFP)는 전국 수준의 공무원 사회적 대화 기구로, 위원장은 공무원 담당 장관이나 위임자가 맡는다. CCFP는 두 측으로 구성하는데, 한 측은 공무원 대표노조의 대표 30명으로 의석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협의회 위원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른 측은 국가, 지자체, 의료 공공서비스 부문의 사용자 대표로 분야별 6명씩 총 18명으로 구성한다. 이는 다시 공공서비스 부문별로 국가공무원최고위원회(CSFPE), 지방공무원최고위원회(CSFPT), 의료공무원최고위원회(CSFPH)로 나누어 구성한다.

15) 이에 추가로 국가공무원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각 공무원노조도 이 위원회 보유 의석수를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담당 장관과 예산 담당 장관의 령에 따라 일정 수의 범부처 담당 전임면제자를 들 수 있다(「명령A」 제16조 제7항).

16) 정식 명칭은 「지방공무원 신분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전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320434>

공무원 수	월 근무면제시간	공무원 수	월 근무면제시간
100명 미만	공무원 수와 동일한 월 근무면제시간	1,751~2천 명	450시간
100~200명	100시간	2,001~3천 명	550시간
201~400명	130시간	3,001~4천 명	650시간
401~600명	170시간	4,001~5천 명	1천 시간
601~800명	210시간	5,001~1만 명	1,500시간
801~1천 명	250시간	1만 1~1만 7천 명	1,700시간
1,001~1,250명	300시간	1만 7,001~2만 5천 명	1,800시간
1,251~1,500명	350시간	2만 5,001~5만 명	2천 시간
1,501~1,750명	400시간	5만 명 초과	2,500시간

B 제14조).<sup>17)</sup> 이는 “1607×유권자 수/1000 = 총 연간 부재승인시간”<sup>18)</sup>으로 구한다.<sup>19)</sup> 근무면제시간의 배분방식은 국가공무원 근무시간면제 할당량 배분 방식과 동일하다(「명령B」 제13조).

#### 의료공무원 : 전임자와 근무시간면제

##### • 전임자

의료공무원의 경우 「명령C」 제19~28조에 전임자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제19조에서는 전국적 수준에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전임자 84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로 CCFP에서 의료공무원 노조에 할당되는 전임자 6.5명이 추가되어 90.5명의 전임자를 제공한다. 제20조에 따라 전체 전임자는 전국적으로 집계한 기관사회협의회 선거에서 노조가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 • 근무시간면제

「명령C」 제16조에 따라 근무면제시간을 부여하고 배분한다. 이에 추가로, 해당기관의 기관

17) 해당시간을 지방공무원에서는 부재승인시간(「명령B」 제14조)으로, 의료공무원에서는 근무시간면제(「명령C」 제16조)로 분류한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의료공무원 규정에 맞추어 근무시간면제로 분류하여 서술한다.

18) 이 공식에서 1607은 정규직 전일제 직원의 연간 근무시간을 나타낸다.

19) 「지방공무원 단결권에 관한 2016년 1월 20일 회람」의 내용으로, 회람 전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circulaire/id/40564>

공무원 수	월 근무면제시간	공무원 수	월 근무면제시간
100명 미만	플타임 상시고용 기준 공무원 수와 동일한 월 근무면제시간	1,251~1,500명	350시간
		1,501~1,750명	400시간
100~200명	100시간	1,751~2천 명	450시간
201~400명	130시간	2,001~3천 명	550시간
401~600명	170시간	3,001~4천 명	650시간
601~800명	210시간	4,001~5천 명	1천 시간
801~1천 명	250시간	5,001~6천 명	1,500시간
1,001~1,250명	300시간	6천 명 초과	1천 명 증가마다 월 100시간 추가

사회협의회 유권자가 수행한 작업 1천 시간당 1시간 비율로 제공한다. 근무면제시간의 배분방식은 국가공무원 근무시간면제 할당량 배분 방식과 동일하다(「명령C」 제16조).

## 특별부재승인 및 여러 제도

### 특별부재승인

「명령A」 제13조와 제15조에서는 공무원 대표가 특별부재승인(ASA)을 통해 노조 총회 및 집행부 회의, 그리고 노사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별부재승인은 노조가 대표로 참여하는 노사공동기관의 모임이나 노조 모임에 참여하는 노조대표에게 허용된다.

#### • 노조 총회 및 운영기구 회의 참여

노조단체 대표에게 자신을 선출한 조합원 총회 또는 운영기구 회의 참석을 위해 특별부재승인을 부여한다(「명령A」 제13조).

- 동일한 대표에게 부여된 연간 특별부재승인 기간은 다음의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통합공무원위원회(CCFP) 미참여 노조, 연맹 또는 총연맹의 총회 또는 운영기구 회의
  - a에 언급된 노조, 연맹 또는 총연맹에 소속된 전국·지방 노조지부, 지회 및 분회의 총회 및 운영기구 회의
- 1에서의 한도는 다음의 경우 연간 20일로 늘어난다.

- a) 국제노조단체 총회 또는 운영기구의 회의
- b) 통합공무원위원회 참여 노조, 연맹, 총연맹의 총회 또는 운영기구 회의
- c) b에 언급된 노조, 연맹 또는 총연맹에 소속된 전국·지방 노조지부, 지회 및 분회의 총회 및 운영기구 회의

이에 반해 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행정결정 이유부기의 대상이 된다.

• 노사공동기구 참여

위와 별도로 통합공무원위원회, 최고국가공무원위원회, 행정사회협의회, 동수행정위원회, 동수자문위원회, 지방경제사회환경위원회, 부처 간 사회활동협의회, 부처 사회활동위원회 및 범부처 지역분과, 퇴직연금기관 및 공제회, 공공서비스의 다양성 증진 담당 공공기관, 병원 및 교육기관 이사회 등에 참석을 요청받은 노조 대표는 참석요청공문 또는 회의안내문서를 간단히 제출하는 것으로 부재 요청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명령A」 제15조). 각 부처의 협의기관 목록은 공무원 담당 장관과 관련 장관의 공동 명령으로 보완될 수 있다.

노조 대표는 행정부가 소집한 업무 회의나 교섭에 참여할 때에도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명령A」 제15조 제2항). 부재승인 기간에는 왕복 이동시간 및 예상 회의시간 외에 부재승인 해당자가 보고 및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포함된다(「명령A」 제15조 제3항).

「명령A」 제13조와 제15조의 특별부재승인과 제16조의 근무시간면제는 서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회람A」 3.7).

**노조설명회 개최 및 참여: 모든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노조관련 시간**

노조는 근무시간 외에 행정건물 내에서 정규 회의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근무시간 중에도 회의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무 중이 아닌 종사자 또는 특별부재승인을 받은 종사자만 참석할 수 있다(「명령A」 제4조).

대표 노조는 근무시간 동안 월례설명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다. 부처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사회협의회에서 최소 1석을 차지하는 경우 대표 노조로 간주한다(「명령A」 제5조). 모든 공무원은 한 달에 최대 1시간 동안(분기당 최대 3시간) 이와 같은 회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연간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부재승인을 부여할 수 없다.

월례설명회와는 별도로 협의기관 위원선출 선거일 전 6주 동안 모든 종사자는 1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특별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해당 특별회의는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킨 모든 노조에서 개최할 수 있다(「명령A」 제5조 제2항). 회의 개최는 회의 날짜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명령A」 제7조).

이상 회의 참여를 위한 특별부재승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명령B」 제5~8조, 제16조), 의료공무원(「명령C」 제5~8조, 제13조)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 노조교육 유급휴가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자 법률」 제83-634호 제21조와 「법률A」<sup>20)</sup> 제34조 제7항에 따라, 현직 공무원은 연간 최대 12일의 근무일 동안 노조교육을 위한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1982년 11월 23일자 법률 제82-997호 제2조).

## ■ 맺음말

지금까지 프랑스 공무원의 노조활동시간 종류, 할당과 배분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특성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 우리나라 공무원 근무시간면제는 최대한도를 전국 수준에서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협의를 통해 1차 규정하고, 교섭단위 교섭을 통해 그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다시 정하게 되어 있다. 반면 프랑스 공무원의 근무시간면제 한도는 명령을 통해 구체적인 양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근무면제시간을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조합원 수”로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프랑스에서 노조는 “조합원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대상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성격을 갖는 것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출장, 공가, 연가 형태로 인정 혹은 묵인되어 왔던 공무원의 노조

20) 정식 명칭은 「국가공무원 신분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전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501099>

활동시간이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근무시간면제”라는 형태로 변경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의 모든 활동이 곧바로 근무시간면제에 포괄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무시간면제제도의 도입과 함께 향후 기관에서 요청하는 정책 협의나 노조 행사 등을 위한 출장 및 공가 규정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사례는 전임자나 근무면제시간 외 특별부재승인 형태로 노조 총회나 간부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어 이러한 고민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활동 및 근무시간면제의 대상이 일부 노조간부, 확장한다고 해도 조합원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노조설명회나 선거를 명목으로 일반 공무원 모두에게 월 1시간씩 근무면제시간을 제공하여 일반 공무원 모두가 노조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된 만큼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ICLI**